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함(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